

# 서울메트로 정관개정(안) 보고

## 1. 개정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2016년 9월 29일 제·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메트로 정관 중 동 조례 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
- 나. 2016년 5월 28일(토) 구의역 승강장안전문 사고 이후 시민안전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된 서울시 「안전분야 외주사업 종합개선대책」을 반영, 외주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 강화
- 다. 「2016년 투자기관 성과평가계획」(공기업담당관-6577호, '15.6.22)에 의거 서울메트로 정관 중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장 경영성과계약 체결을 보고사항으로 변경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에 따라 서울메트로 정관 정비
- 비상임이사 임원 정원 및 비상임이사(위촉직) 범위조정 : 제10조(임원)
    - 정원조정 : 8 → 10명(당연직이사 및 근로자 이사 각 2명 포함)
      - ☞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근로자 이사 2명 가능
    - 범위조정 : 비상임이사(위촉직)에 근로자이사(공사 재직자)도 포함
  - 근로자이사의 임기종료 : 제11조(임기)
    - 근로자이사의 임기종료 시(근로계약 종료 포함) 선출 절차 재이행
  - 근로자이사의 결격사유 규정 : 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
    - 「근로기준법」,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상의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자의 근로자이사직 제한
      - ☞ 「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.」
  - 근로자이사의 수당지급 : 제18조(임·직원의 보수)
    - 근로자이사는 무보수 원칙, 회의참석 시 실비차원의 수당지급은 가능
- 나. 「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에 따라 서울메트로 정관 정비
- 비상임이사가 서울메트로와 관련있는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 : 제17조(임직원의 겸직제한)
- 다. 서울시 「안전분야 외주사업 종합개선대책」을 반영, 「안전분야 사업」을 외주화하는 경우, 「이사회 의결」을 의무화하여 기관의 책임성 제고

○ **이사회 의결사항 추가** : 제24조(의결사항)

-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·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위탁 관련 사항  
라. 「2016년 투자기관 성과평가계획」에 의거 업무수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‘사장 경영성과계약 체결’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보고 안건으로 상정토록 변경

○ **이사회 의결사항 중 삭제** : 제24조(의결사항)

- 사장과 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 삭제

**3. 정관변경 절차**

가. 서울시 협의 → 이사회 의결 →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보고→  
서울시장 인가 → 시행

**붙임** 1. 서울메트로정관중개정정관(안) 1부.

2. 서울메트로정관중개정정관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## 서울메트로정관중개정정관(안)

서울메트로정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(임원) 제1항 중 “8인이내의 비상임이사”를 “10인이내의 비상임이사(당연직 이사 및 근로자이사 각 2명 포함)”로 하고, 제4항 제2호 중 “전문가 또는 시민대표”를 “전문가, 시민 또는 근로자대표(공사재직자)”로 한다.

제11조(임기)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제1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2호(근로자이사만 해당)

제17조(임직원의 겸직제한)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비상임이사는 서울메트로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.

제18조(임·직원의 보수)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,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, 근로자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4조(의결사항) 제11의2호를 신설하고, 제18호를 삭제한다.

11의2.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·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 
(신설)

18. 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 (삭제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## 서울메트로정관중개정정관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<p><b>제10조(임원)</b> ①서울메트로에 사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상임이사와 <u>8인이내의 비상임이사</u> 및 감사 1인을 둔다.</p> <p>④비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.</p> <p>1. 당연직 :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</p> <p>2. 위촉직 : 세무 및 회계전문가, 지하철 운영과 관련되는 <u>전문가 또는 시민대표</u></p>	<p><b>제10조(임원)</b> ①서울메트로에 사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상임이사와 <u>10인이내의 비상임이사(당연직이사 및 근로자이사 각 2명 포함)</u> 및 감사 1인을 둔다.</p> <p>④비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.</p> <p>1. 당연직 :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</p> <p>2. 위촉직 : 세무 및 회계전문가, 지하철 운영과 관련되는 <u>전문가, 시민 또는 근로자대표(공사재직자)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는 근로자 이사 2명 (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사항 반영)</li> </ul>
<p><b>제11조(임기)</b>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(<u>단서 신설</u>)</p>	<p><b>제11조(임기)</b>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u>다만,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근로자이사는 선임 시 근로자의 지지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, 임기종료 시 선출절차 재이행(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사항 반영)</li> </ul>
<p><b>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</b>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서울메트로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~7. (생략)</p> <p><u>&lt; 신 설 &gt;</u></p>	<p><b>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</b>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서울메트로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~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2호(근로자이사만 해당)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「근로기준법」, 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」의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려움(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</li> </ul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② ~ ③ (생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	에 관한 조례」 제정사항 반영)
<p><b>제17조(임직원의 겸직제한)</b> 서울메트로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상임임원은 시장의,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</p> <p>&lt; 신설 &gt;</p>	<p><b>제17조(임직원의 겸직제한)</b> ① 서울메트로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상임임원은 시장의,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</p> <p>② <u>비상임이사는 서울메트로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.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상임이사가 서울메트로 관련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사 운영의 투명성 강화(「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사항 반영)</li> </ul>
<p><b>제18조(임·직원의 보수)</b>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-----(생략)----- 다만, <u>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,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</u>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(이하 생략)</p>	<p><b>제18조(임·직원의 보수)</b>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(현행과 같음)----- 다만, <u>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,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, 근로자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</u>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(이하 현행과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근로자이사는 근로계약상 보수를 받고 있어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, 이사회 참석에 대한 실비차원의 수당은 지급 가능 (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사항 반영)</li> </ul>
<p><b>제24조(의결사항)</b> 다음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p> <p>1.~11. (생략)</p> <p>&lt; 신설 &gt;</p> <p>12.~17. (생략)</p> <p><u>18. 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9. (생략)</p>	<p><b>제24조(의결사항)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1의2.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·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</u></p> <p>12.~17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 삭제 &gt;</p> <p>19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‘안전분야’사업 외주화 시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여 기관의 책임성 제고(서울시 지침 『안전분야 외주사업 종합개선태책』에 따른 이사회 의결사항 추가)</li> <li>기존 의결사항을 이사회 보고안건으로 상정토록 변경, 업무수행의 효율성 증대(서울시 지침 『2016년 투자기관 성과평가계획』, '15.6.22.)</li> </ul>